

2022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8. 22.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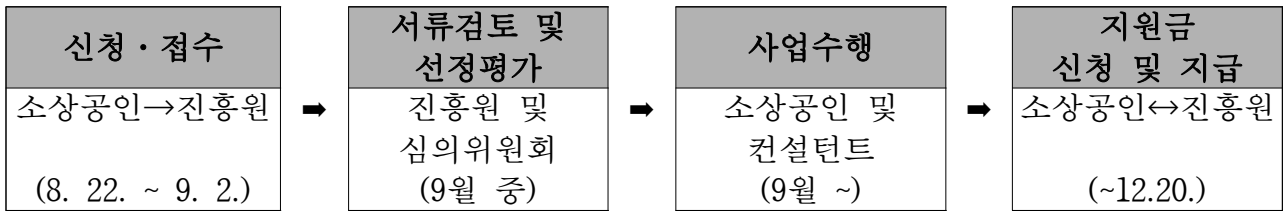
1. 선정계획

- 신청기간: '22. 8. 22(월) ~ '22. 9. 2(금)
-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상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 * 대상지역: 9개 시군(군위, 봉화, 상주, 영덕, 영천, 울릉, 울진, 청도, 청송)
 - * 상주, 영천의 경우 예산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 1,000만원 내외에서 지원 가능,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신청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 이하로 지원 가능
- 선정규모: 13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시군	선정규모	시군	선정규모
군위	2	울릉	2
봉화	2	울진	1
상주	1	청도	1
영덕	2	청송	1
영천	1	합계	13

- 사업내용
 - 도내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홍보물 제작, 점포환경 개선, 안전위생설비 설치, POS시스템 구축 및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사기진작

□ 추진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 단 포장재 제작지원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또는 동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 및 도 지회

-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또는 재보증 제한 업종(투기, 저해업종 등)
- 본인명의로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 무점포 사업자(홍보·광고비 지원업체 예외)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 원으로 신고된 경우
- 최근 3년간 타기관(시군 및 유관기관 등) 유사과제(10백만원 이상) 수혜자
- * 전년도 새바람 체인지업 참여업체 신청 불가
- 그 밖의 지원제외 대상 업종(별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13개소 내외(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금: 1개소당 최대 1,400만원

○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의 70% 지원

* 단위사업별료(홍보지원,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지원, POS시스템 구축, 포장재 제작 지원) 지원한도 확인 요망

* 상주, 영천의 경우 예산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 1,000만원 내외에서 지원 가능,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신청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 이하로 지원 가능

○ 컨설팅 비용의 경우 상기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컨설팅 지원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

□ 세부 지원 내용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지원 내용	지원 한도액
1. 전문 컨설팅	전문컨설팅 (필수, 점포당 2~3회)	· 전문가 매칭을 통해 점포 활성화를 위한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전액 지원
2. 홍보지원	홍보물 제작	▶ 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CI, BI 제작 등	350만원
3. 점포 경영 환경개선	옥외 간판교체	▶ LED 간판, 판형 간판 등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바닥, 전기조명공사 등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소도구, 냉장진열대 구입 등	700만원
4. 안전 위생 지원	안전위생 설비	▶ CCTV 기기, 프로그램 구매, 소독기, 살균기 등	지원범위 내 선택
5. POS시스템 구축	POS 단말기 지원	▶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 지원	
6. 포장재 제작 지원	포장재 제작	▶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특색있는 포장재 제작으로 브랜드가치 제고(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만 신청)	105만원
			1,400만원

* 세부지원 내용은 선정 후 변경 불가

[예시]

(단위: 만원)

세부사업명	집행금액 (VAT 제외금액)	자부담	지원금액	비고
홍보지원	1,000	650	350	최대지원금
	500	150	350	최대지원금
	300	90	210	
점포 경영환경 개선	2,000	1,300	700	최대지원금
	1,000	300	700	최대지원금
	500	150	350	

《유의사항 · 우대사항 및 지원불가사항》

▶ 유의사항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기업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지원금액은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70% 지원(자부담: 공급가액의 30% + VAT)
- 사업비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1,400만원이며,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전문컨설팅 필수이며, 컨설팅비용 전액 지원).
 - ※ 상주, 영천의 경우 예산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 1,000만원 내외에서 지원 가능, 타 시군의 경우에도 신청현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포장재 제작 지원의 경우 수행업체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함.
- 보조금 지원 받는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해당 사업을 3년간 운영하여야 함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3년간 동업종 유지).
- 신청한 사업계획 내 세부지원 내용은 선정 후 변경 불가함.
- 선정된 점포는 신청 시 제출한 견적업체에서 시공 및 납품을 진행하여야 하며, 견적업체의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변경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지원우대

- 청년상인 운영 점포 - 소상공인창업교육 수료자(최근 2년)
-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보유) -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 지원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 지원불가: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디지털 사이니지 등
 - ※ 지원가능: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구매 등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홍보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불가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22. 8. 22(월) ~ '22. 9. 2(금)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주 소: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경북행복경제지원단

○ 이메일: kth07@gepa.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신청서	- 첨부파일 내용 기재 후 발송	1부 [붙임 1]*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수집/제공 동의서 이행각서	- 첨부파일 내용 기재 후 발송	1부 / [붙임 2]* 개인정보동의서, 이행각서
견적서	- 신청 세부사업에 대한 견적서(반드시 경북도내 소재 업체)	항목별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택1 (영업신고증 불가)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기간: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	1부
국세완납증명서	- 홈텍스,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1부
지방세완납증명서	- 민원24,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	1부
상시근로자수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기간: 최근 12개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택1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가점사항	- 청년상인 운영 점포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최근 2년) -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서 보유 시) - 사회적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1부(해당시)

4. 선정 발표(예정)

- 심사 항목: 혁신의지, 제품·서비스, 경영·관리, 잠재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기타 가점사항
 - 선정 발표: 2022년 9월 중
 - 선정결과의 경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 선정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업체 미확인(연락불능) 및 착오로 인한 평가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지원 취소 주요 사유
 - 결과물이 사전에 시행되었거나, 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 결과 보고서 미제출, 정산검사 결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지원신청 점포의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 발생 시
 - 기타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 발생 시

6. 문의처

-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4-995-9936, 054-470-8514~5)

- 붙임. 1. 사업지원신청서 1부(지원사업, 포장재)
2.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행각서 각 1부
- 별첨.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